



질병관리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배포 및 홍보 요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1.1.시행)에 따른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기존 「2019년 VRSA/CRE 관리지침」에 표본감시 의료관련감염병(4종)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고, 귀·협회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VRSA/VISA>

항목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VRSA 법정감염병 분류	제3군감염병	제2급감염병	감염병예방법 개정
신고시기	지체없이	24시간 이내	감염병예방법 개정
벌칙(미신고, 허위신고 등)벌금	200만 원	500만 원	감염병예방법 개정
신고의무자 확대	의사,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감염병예방법 개정
관련 서식	감염병 분류체계 군별 분류	감염병 분류체계 급별 분류	감염병예방법 개정
역학조사 수행절차		역학조사 시행 검체 관련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의뢰가능	역학조사 대응체계 구체화

<CRE>

항목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CRE 법정감염병 분류	제3군감염병	제2급감염병	감염병예방법 개정
신고시기	지체없이	24시간 이내	감염병예방법 개정
벌칙(미신고, 허위신고 등)	200만 원	500만 원	감염병예방법 개정
신고의무자 확대	의사,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감염병예방법 개정
관련 서식	감염병 분류체계 군별 분류	감염병 분류체계 급별 분류	감염병예방법 개정
역학조사 수행절차		역학조사 시행 검체 관련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의뢰가능	역학조사 대응체계 구체화
CPE 확인	CRE 양성 확인 시	CRE 양성 확인 시 ※ CPE 신고자 격리해제 목적인 경우 미시행 가능	CPE 검사 예외 사례 명시

<표본감시 의료관련감염병>

항목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총론	-	개요, 수행체계, 감시체계, 예방 및 관리 추가	감염병예방법 개정
각론	-	VRE, MRSA, MRPA, MRAB 각 감염병의 개요, 감시체계, 임상적 특징, 진단 및 신고기준, 신고 현황 등 추가	감염병예방법 개정

배포 방법: 온라인 및 인쇄본 배포

*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www.cdc.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2020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인쇄본은 4월중 배포 예정

붙임 2020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1부. 끝.

질병관리본부장

수신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중소병원협회



역학조사관 서지수 보건연구사 출장 보건연구관 박현정 의료감염관리과 전결 2020.3.30
장 이형민

협조자

시행 의료감염관리과-373 (2020. 3. 30.)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의료감염관/ 리과 http://cdc.go.kr

전화번호 043-719-7583 팩스번호 043-719-7599 / js0228@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